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64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조인철・박해철・이기헌

정동영 • 이건태 • 박용갑

김 현 • 이광희 • 조계원

최민희 · 주철현 · 박희승

윤건영 • 박민규 • 오세희

고민정 • 허성무 • 민형배

이재관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16세 이상인 사람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하지 않아 16세 미만인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됨.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도록 함(안 제2조제 19호의2).
- 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제55조의2제1항 등).
- 다.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라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중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제56조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으로 한다.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	19의2
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u>20</u> 킬로미터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 ~ 33. (생 략)	20. ~ 33.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5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
	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자(이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
	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
	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
	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
	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저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 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 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금지구
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아니
하도록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ll 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사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및
제56조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사업자로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람

② (생략)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60조(과태료) ① ------

- 1. ~ 9. (현행과 같음)
- 10. 제5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 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 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 <u>업자</u>
- ② ~ ④ (현행과 같음)